

큰 不便을 끼쳐드리게 됐던 점에 대해서는 所管局長으로서 市民에게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委員님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指導監督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産業經濟局에서 上程한 改正條例案에 대해서 提案說明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特別市都·小賣業振興審議委員會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입니다.

本 條例는 都·小賣業振興法 第41條第2項 및 同法施行令 第34條第35條의 規定에 의해서 서울特別市의 都·小賣業 振興과 調整에 관하여 市長의 諮問에 응하기 위해서 두는 서울特別市 都·小賣業振興審議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 등에 관해서 必要한 事項을 정해 놓은 條例입니다.

이 委員會 構成은 同條例 第3條에 委員長 1人을 포함해서 15人 이내의 委員으로 構成 하도록 되어 있는데 委員長은 副市長이 되고 委員은 당연직으로는 市政研究官과 産業經濟局長, 都市計劃局長, 住宅局長으로 되어 있고, 任期 2年인 위촉직으로는 서울特別市 商工會 議所 事務局長, 또 都市計劃 및 建築 專門家, 流通産業 분야에 經驗과 學識이 풍부한 者로 構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改正條例案을 上程하게 된 이유는 서울시의 職制改正에 의해서 市政研究官의 職制가 政策企劃官으로 名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當然職 委員에 市政研究官을 政策企劃官으로 변경하고자 改正案을 上程했습니다.

두번째로 이 事項은 서울시 條例 改正된 內容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내용으로서 委員님들께서 原案대로 通過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李敏國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贊穆 專門委員 李贊穆입니다.

(報告)

1994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장의 제출한 서울특별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93. 7.16.)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구성위원의 직명을 개정된 직제명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동 개정조례안 제3조의 서울특별시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중에서 시정연구관을 "정책기획관"으로 직명을 개정하려는 것임.

3. 관련근거 법령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3932호)

4. 검토의견

○본 건 개정조례안은 도·소매업 진흥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을 종전에 시정연구관의 직명을 정책기획관으로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직제상의 직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 개정조례안 제3조의 위원회의 위원구성에서,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1994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14422호)개정에서 서울특별시 부시장을 국가공무원인 부시장과 지방공무원인 부시장으로 직명이 개정됨에 따라 동 위원회 위원장의 직명을 변경된 지휘·감독을 받는 부시장(지방공무원 부시장)으로 직명을 변경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敏國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提案說明과 檢討報告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質疑와 答辯時間이 되겠습니다. 本 案件에 대해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해